[별표4] 문제과제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(제48조제1항 관련)에 따라 법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0. 29>

제5장 연구개발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

- 제11조 (연구개발비 정산) ① 과제실시책임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연구개발비 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수행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
 - 2. 위탁과제 예산편성지침 및 수행계획서의 예산계획과 집행내역의 적정성
 - 3. 과제수행 목적 이외의 집행여부 등
 - ② 과제실시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구책임자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잔액 발생 및 불인정 금액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.
 - ③ 과제관리부서는 과제실시부서로부터 접수한 정산서류를 최종검토하며 적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사실 확인 후 과제실시부서에 통보하여 환수할 수 있으며, 불이행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**제12조(평가결과의 활용)** ① 원장은 위탁과제 최종평가결과 95점 이상 점수를 획득한 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발된 과제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중간 또는 최종평가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과제실시책임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제의 해지, 중단, 익년도 과제참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단 과제실시부서에 속한 과제심의위원은 재평가 심의시 배제한다.<개정 2015. 3. 24><개정 2019. 10. 29>
 - ③ 과제실시부서는 위탁과제의 결과물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 10. 29>
- 제13조(연구결과의 사후관리) ① 과제실시책임자는 위탁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, 무형적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과제실시부서는 최종보고서를 경영정보공시시스템,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 및 과제실시부서의 사업 특성의보안사항 등이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0. 29>

제14조(보안관리) 위탁과제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진흥원의 보안업무규칙을 따른다.